##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고
		개발 제한 제한 구역 의 행위제한 □ 허가대상(1항: □1호 □1의2호 □2호 □3호 □3의 구역 행위 □ 신고대상 제한 □ 허가・신고 제외대상 □ 허가갈음대상	·	
1-1	개발제한 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허가 또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신고 □ 적 합 □ 부적합 기준		
	행위제한)	관리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계획 수립 대당있음 대당 해당 없음		
		관계 기관 협의 대당있음 대당없음		
1-2	<b>개발제한</b> 구역법 제13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대한 특례)	존속 건축 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ㅎ 물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특례	l가	
1-3	<b>개발제한</b> 구역법 제15조 (취략자구에 대 한 특 례 )	취락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지구 □ 해당있음 (3항의 특례적용) 특례 □ 해당없음		
2-1	건축법 제55조	건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율 □ 적 합 □ 부적합		
2-1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 율 □ 완화대상 □ 강화대상		
2-2	건축법 제56조	용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률		
2-2	(건축물의 용적률)	용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률 □ 완화대상 □ 강화대상		

3-1	고도 육성법 제11조 (지정지구 에서의 행위제한)	특별 보존 지구 보존 육성 지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3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4-1	공유수면법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공유 수면 점용 · 사용 허가	공유수면의 점유 또는 사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1항단서:□[재난 및 연전관리기본법] 제37조 □ 제28조)	
5-1	<b>공항시설법</b> <b>제10조</b> (행위 등의 제한)	행위 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 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신고대상	
5-2	<b>공항시설법</b> <b>제34조</b> (장애물의 제한 등)	장애 물 제한 표면 높이 제한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 대 상 □ 비대상 [□1항 단서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예외대상 (1항 : □1호 □2호)	
6-1	교육 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 경보호 구역제 한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대 상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 비대상 (1항: 14~29호 중 상대보호구역 심의통과)	
7-1	국 <b>토계획법</b> 제54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에서의 건축 등)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  □ 해당있음(지구단위계획에 적합) □ 해당없음	
7-2	<b>국토계획법</b> <b>제58조</b> (개발행위	개발 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허가의 기준 등)	허가 기준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7-3	국 <b>토계획법</b> 제 <b>63조</b>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 발행위허가 제한  제한대상(심의대상) (3년이내,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제한연장대상(심의제외) (2년이내, 1항: □3호 □4호 □5호)	
7-4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 ·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 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국토계획법 제76조	용도 지역 제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대통령령)	
7-5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용도 지구 제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조례)	
		개별 제한 규정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해당있음 [적합, (5항 : □ 1호 □ 1의2호 □ 1의3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행 □ 해당없음	
	<b>국토계획법</b> <b>제77조</b> (용도지역 의 건폐율)	국토 계획 법에 따른 건폐 율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 적 합(1항: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7-6		조례 에 른 건 <sup>율</sup> 필수용 적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부적합	
		조례 에 따른 건폐 율 적용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 □1호 □2호 □3호 □4호) □ 해당없음	

		국토 계획 법에 따른 용적 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적 합(1항:□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 2호다목 □3호 □4호)□2항) □ 부적합	
		조례 에 따른 용률 필 작용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77조 3항 : □2호 □3호 □4호 □5호) □ 부적합	
7-7	<b>국토계획법</b> 제78조 (용도지역 의 용적률)	조례 에 따른 용적 률 적용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6항) □ 해당없음	
		조에 따는 로모 등 제 제 등 로모 등 제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대한 해당있음 (적합) 대당없음	
		용적 률 완화 중첩 적용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대 상 (적합, 7항 : □1호 □2호)  대 심의대상 □ 비대상	
	<b>국토계획법</b> <b>제79조</b> (용도지역 미지정	용도 미지 정 지역 의 적용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대한 해당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대당없음	
7-8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 의 행위 제한 등)	세부 용도 미지 정 지역 의 적용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대 해당있음 (2항: 대 도시지역 대 관리지역) 대당없음	
7-9	국 <b>토계획법</b> 제 <b>80조</b> (개발제한 구역에서 의 행위 제한 등)	개발 제한 구역 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0	국토계획법 제80조의2 (도시자연 공원구역 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 자연 공원 의 행위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1	국토계획법 제80조의3 (입지규제 최소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입제 자세소 역 의 위한 제한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적 합 □ 부적합	
7.40	<b>국토계획법</b> <b>제81조</b> (시가화	허용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도시·군계획사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7-12	조정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행위 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비대상	
7-13	국토계획법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이 상도역구역에 치는지 대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1항 □2항 □3항 □3항단서)	
8-1	군사기지법 제13조 (행정기관 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보호 구역 의 행위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 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 호 □13호 (2항: □1호 □2호)) □ 협의제외대상	
9-1	<b>급경시지법</b> 제10조 (붕괴위험 지역에서의 행위협의)	붕괴 위험 지역 의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인ㆍ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제외대상	
10-1	<b>농어촌</b> 리모델링법 제10조 (행위제한 등)	농어 촌 정비 구역 행위 제한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0-2	<b>농어촌</b> 리모델링법 제29조 (대지의 용도)	대지 실시 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11-1	<b>농어촌</b> 정비법 제69조 (조성용지 의 용도)	조 용 이 용 용 용 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의 건설	
11-2	농어촌 정비법 제111조 (마을정비 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마을 정비 구역 행위 제한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1	<b>농지법</b> 제 <b>32조</b>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농업 진흥 구역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3항 □4항]	
12-1		농업 보호 구역 행위 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호) □3항 □4항]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농지전용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12-2	<b>제37조</b>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한)	농지 전용 및 용 도 일시 사용한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비대상	
13-1	<b>댐주변</b> 친환경 보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댐친 환경 활용 구 행위 제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14-1	<b>도로법</b> <b>제27조</b> (행위제한 등)	도로 구역 행위 제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14-2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접도 구역 행위 제한	접도구역 행위 제한 □ 대 상 (3항 : □ 1호 □2호) □ 비대상	
15-1	도시공원법 제16조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여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5-2	<b>도시공원법</b> <b>제38조</b> (녹지의	녹지 점용 허가	녹지점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허가제외대상 (□ 1항 단서 □ 5항)	
13-2	전용허가 등)	점용 대상 및 기준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16-1	도서 생태계법 제8조 (행위제한 )	특정 도서 행위 제한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7-1	마리나 <b>항만법</b> <b>제12조</b> (행위 등의 제한)	마리 나 항만 구역 행위 제한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8-1	매장 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 문화 재 지표 조사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대 상   비대상	
18-2	<b>매장</b> <b>문화재법</b> <b>제8조</b> (매장 문화재	매장 문화 재 유존 지역 개발 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대상)	
	유존지역 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인가 허가 기준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19-1	물류 시설법 제25조 (행위제한 등)	물류 단지 행위 제한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20-1	산림 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 보호 구역 행위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1-1	산림 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입목 벌채 등	산림(산림보호구역 제외)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1항 □2항 단서)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2-1	산지 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 · 일시사 용제한지 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 행위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의2호 □9의3호 □10호 □11호) □ 비대상	
	<b>산지</b> <b>관리법</b> <b>제12조</b> (보전산지 에서의 행위제한)	임업 용 산지 행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대 상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 비대상	
22-2		공익 용 산지 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비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 □1호 □2호)	
22-3	산지 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적 합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부적합	
	허가 기준 등)	기준 완화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1항1~4호 적용제외) □ 대 상(□ 준보전산지 □ 2항) □ 비대상	
23-1	<b>세계유산법</b> 제11조 (세계유산 지구의 보호)	세계 유산 지구 지정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24-1	<b>수도권</b> 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 권역의 행위제하)	과밀 억제 권역 의 행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24-2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성장관리 권역의 행위제한)	성장 관리 권역 행위 제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24-3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9조 (자연보전 권역의 행위제한)	자연 보전 권역 행위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 1호 □ 2호) □ 허용대상	
25-1	<b>수도법</b>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 원 보 역 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3항 : □1호 □2호) □ 허가대상 (4항 : □1호 □2호 □3호) □ 신고대상	
26-1	<b>습지보전법</b> <b>제13조</b> (행위제한)	습지 보호 지역 행위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허용대상 [□1항 단서 (5항 : □1호 □2호 □3호)]	
27-1	어 <b>촌특화</b> 발전법 제18조 (행위제한 등)	어촌 특화 발전 구역 행위 제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8-1	역시문화권 정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역사 문화 정비 구역 행위 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9-1	<b>역세권법</b> <b>제11조</b> (행위 등의 제한)	개발 구역 행위 제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30-1	<b>연구개발</b> <b>특구법</b> <b>제36조</b> (건축행위 의 규제 등)	건축 행위 규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31-1	자연 공원법 제20조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시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 사업 및 공원 시설 관리	공원사업 맟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31-2	<b>자연</b> <b>공원법</b> <b>제71조</b> (허가에 관한 협의 등)	공원 관리 청 허가 협의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32-1	자연환경 보전법 제15조 (생태경관 ㆍ보전지 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 경관 보전 지역 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대상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5항]]     허용대상 [(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항: □1호 □2호 □3호 □4호 □5호) (4항: □1호 □2호 □3호 □4호)]     타법적용대상	
32-2	자연환경 보전법 제26조 (시 · 도 생태 · 경관 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 생태 경관 보전 지역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22_1	전통사찰 보존법 제10조 (전통사찰	전통 사찰 보존 구역 허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대 상(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	
33-1	역사문화 보존구역 의 지정 등)	전통 사찰 보존 구역 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대 상   비대상	
34-1	<b>전파법</b> 제52조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보호)	무선 방위 측정 장치 보호 구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35-1	<b>철도인전법 제45조</b> (철도보호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 보호 지구 행위 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대 상(신고대상) □ 비대상	
36-1	<b>친수구역법</b> <b>제9조</b> (행위제한 등)	친수 구역 행위 제한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7-1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택지 개발 지구 행위 제한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38-1	해안내륙 발전법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 구역 행위 제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39-1	<b>혁신도시법</b> <b>제9조</b> (행위 등의 제한)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 행위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40-1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 (특별종합 대책의 수립)	설치 제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고
1-1	건 <b>축법</b> 제19조의2 (복수	복수 용도 허가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국 I 용도의 인정)	복수 용도 기준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 적 합 □ 부적합		
		설계자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4항)		
1-2	건 <b>축법</b>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글게)	설계 도서 서명 날인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대지 높이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건축법 제40조	안전 위험 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1-3	(대지의 안전 등)	오수 처리 시설	빗물·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손궤 우려 토지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1-4	<b>건축법</b> <b>제42조</b> (대지의 조경)	조경 설치 대상	조경 의무 설치 대상 대 상   비대상   예외대상		
1-5	건 <b>축법</b> 제 <b>43조</b> (공개	공개 공지 설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비대상		
	공지 등의 확보)	완화 적용 대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 대 상 □ 비대상		
1-6	건축법 제 <b>44조</b>	접도 준수 대상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1-0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기준 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1-7	건 <b>축법</b> 제 <b>46조</b>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의 지정 □ 일반대상 □ 특수대상 (□1항단서 □3항)		

1-8	건 <b>축법</b>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준수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지표 아래 제외)	
1-9	건축법 제48조	건축물 구조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구조내력 등)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대 상(내진성능 확인) 대상	
1-10	건축법 제48조의 4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부속 구조물 설치 관리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1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피난 시설 설치 및 용도 제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4항 □5항1호 □5항2호) □ 부적합	
	건축법 제50조	내화 구조 대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대 상   비대상   예외대상	
1-12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 구획 대상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13	건 <b>축법</b> 제 <b>50조의 2</b>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고층 건축 물의 피난 및 안전 기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	기준 강화 대상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대 상   비대상	
1-14	건축법 제51조	내화 구조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 내화구조 적용 □ 대 상 □ 비대상	

		적용		
	(방화지구	불연 재료 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안의 건축물)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방화지구에서 지붕・방화문・외벽(인접대지 경계선)에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5	건축법 제52조	외벽 마감 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1-13	(건축물의 마감재료)	창호 방화 성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1-16	건 <b>축법</b> 제52조2 (실내건축)	실내 건축 의 구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1-17	건 <b>축법</b> <b>제53조</b> (지하층)	지하 층 기준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1-18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 예방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 적 합 □ 부적합	
1-19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용 지 구 역 지 구역 에 걸 는 대 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2항 □3항 □3항단서 □4항)	
1-20	건 <b>축법</b>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적 합 (□ 1항 □ 2항) □ 부적합 □ 예외대상	
1-21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1-22	건 <b>축법</b> 제59조 (맞벽 건축과	맞벽 건축 연결 복도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연결복도)				
	-1-ul	가로 구역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1-23	건 <b>축법</b>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1-23	(신국골의 높이 제한)	가로 구역 높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 7	교 제한 완화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정북 일조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 대 상 (적합) □ 비대상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b>제61조</b> (일조 등의 확보를	정남 일조	□ 대 상 [적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6호□7호 □8호)] □ 비대상		
1-24	리모글 위한 건축물의	공동 주택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는 '는 ' 높이 제한)	채광 확보	□ 대 상 [적합, (2항 : □1호 □2호)] □ 비대상		
		적용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고초내	제외	□ 대 상 □ 비대상		
1-25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 설비 기준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제 <b>64조</b> (승강기)	승강기 설치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4.00		<b>제64조</b> (승강기)	비상용	□ 대 상 □ 비대상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1-26				□ 대 상 □ 비대상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승강기 설치	□ 대 상 □ 비대상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1-27	(기술적 기준)	기준 적용	□ 대 상 (적합, □1항 □4항) □ 비대상		
	건 <b>축법</b> 제 <b>84조</b> (면적·높이	면적 높이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		
1-28	및 층수의 산정)	- 증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공중 화장실법	공중	고즈하자사이 서취 기즈		
2-1	<b>제7조</b> (공중화장실	화장실 설치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 │ □ 적 합 (□1항 □2항 □3항 □5항) □ 부적합		
	등의 설치기준) 	기준			
	<del>공중</del> 화장실법 제7조의2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 연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2-2	<b>제/소의2</b>   (어린이용   대 · 소변	성유야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항공 장애 표시 등의 설치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4.4	교통약자법 제10조	설치 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4-1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기준)	설치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2항 □3항 □ 부적합	
5-1	<b>녹색건축법</b> <b>제14조</b>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 절약 계획 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 비대상	
	서 제출)	검토 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b>녹색건축법 제14조의2</b>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일사 조절 장치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대 상   비대상	
5-2		에너지 절감 관리 설비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비 설치 기준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b>녹색건축법</b> <b>제15조</b>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녹색 건축 활성화 기준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5-3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 해당있음 (□1항 □1항1호 □1항2호) □ 해당없음	
	다중이용 업소법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6-1	제9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간이 스프링 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신고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 대 상 (3항 : □1호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 3 호) □ 비대상	
		설계 도서 기준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미술 작품 설치 대상	미술작품 설치대상	
7-1	대한 미술작품 의 설치 등)	미술 작품 설치 기준	미술작품 설치기준	
8-1	<b>문화재</b> 보호법 제 <b>35조</b> (허가 사항)	국가 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1항: □1호 □2호 □3호 □4호)] □ 변경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허가대상 (지자체) □ 변경허가대상 (지자체, □ 1항단서 □ 3항) □ 허가갈음대상	
9-1	<b>물재이용법</b> 제8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 관 리)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시설 기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9-2	<b>물재이용법</b> 제 <b>9조</b> (중수도의 설치 ·	중수도 설치 대상	중수도의 설치 대상  대 상 (1항: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비대상 □ 예외대상	
	_ · · 관리)	시설 기준	중수도의 시설 기준	
10-1	부동산 개 <b>발업법</b> 제4조 (부동산 개발 업의 등록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항 : □ 1호 □ 2호 □ 3 호 □ 4호 □ 5호)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 자동차	소방 자동 차 전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대 상 (적합) □ 비대상	

	전용구역 등)	구역 의 설치		
12-1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 허가 등의 소방 동의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대 상	
12-2	소방시설법 제8조 (성능위주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 의 설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3	소방시설 법 제12조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의 관리 등)	소방 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 대 상(설치기준 적합) □ 비대상	
13-1	소음·진동 관리법 제7조 (공장소음 진동배출 허용기준)	배출 허용 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 적 합(□1항 □3항) □ 부적합	
13-2	소음•진동 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 의 설치)	방지 시설 설치 대상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호 □2호)	
13-3	소음•진동 관리법 제12조 (공동 방지시설 의 설치 등)	공동 방지 시설 설치 대상 공동 방지 시설 기준	소음·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대 상 □ 비대상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배출허용 기준  대 합 □ 부적합	
13-4	소음•진동 관리법 제40조 (방음시설 의 성능과 설차가준 등	방음 시설 기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14-1	<b>수도법</b> <b>제15조</b> (절수설비 등의설치)	절수 설비 설치 절수 설비 기기	절수설비 설치  대 상 □ 비대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 상 □ 비대상	

		설치		
	<b>수도법</b> <b>제18조</b> (시설	수도 시설	수도시설 설치 기준	
14-2		설치	□ 적 합 □ 부적합	
	기준 등)	저수조 설치	저수조 설치 기준	
	신에너지	실재	□ 적 합 □ 부적합	
	법 제12조	생에 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비대상	
15-1	사업에의	의무		
	투자권고 및	신재 생에		
	신•재생	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에너지 이용의무	설비 설치	□ 대 상 □ 비대상	
	화 등) <b>야생생물</b>	권고		
	법	인공 구조물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인공구조물 설치대상	
	<b>제8조의2</b> (인공구조	설치	□ 대 상 □ 비대상	
16-1	물로 인한			
	야생동물	설치	인공구조물 설치기준	
	의 피해방지)	기준	□ 적 합 □ 부적합	
	연구개발 특구법			
	제44조	건폐		
17-1	(국토의 계획 및	율및 용적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이용에 관한	률의 특례	□ 대 상 □ 비대상	
	법률의	구네		
	특례)	위험		
		물	위험물 저장·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위험물	저장 제조	커숍을 시청·세도시들의 물시 기준   □ 적 합 □ 부적합	
	인전관리법 제5조	시설 기준		
18-1	(위험물의	위험		
	저장 및 취급의	물 임시		
	제한)	저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취급 시설		
		기준		
	전기통신 사업법			
10.1	제69조	전기통 시서리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19-1	(구내용 전기통신	신선로 설비	□ 적 합 □ 부적합	
	선로설비 등의			

	설치)			
20-1	전력기술 관리법 제10조 (기술기준 의 준수)	설계 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1-1	<b>자전거법</b> <b>제23조</b>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자전 거 주차 창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22-1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	편의 시설 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편의사설의 설차기준)	편의 시설 기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2-2	<b>장애인등</b> <b>편의법</b> <b>제17조</b>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대 상   비대상	
23-1	주거기본법 제18조 (최저주거 기준 미달 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주택 최저 주거 기준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24-1	<b>주차장법</b> <b>제6조</b> (주치장 설비기준 등)	주차 장 구조 설비 기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24-2	<b>주차장법</b> <b>제12조</b> (노외 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 주차 강 기준 노외 자 장 자 지한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 대 상 □ 비대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4-3	<b>주차장법</b>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 전용 건축 물 기준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가목 □4호나목) □ 부적합	
24-4	<b>주차장법</b> <b>제19조</b> (부설주차 장의 설치)	부설 주 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 설치대상 □ 비대상 □ 설치제한대상 □ 설치권고대상 □ 예외대상 (□4항 □5항)	

				h	Y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방 주차 장 지정	개방주차장의 지정 대 상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차계획서)	부설 주차 장 설치 계획 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대 상 □ 비대상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의 용모변경 금지 등	부설 주차 장 용도 변경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허용대상 (1항 : □1호 □2호 □3호) □ 제한대상		
24-7	<b>주차장법 제19조의5</b>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기계 식 주차 장 설치 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적 합 [□ 1항 □2항(해당 시)] □ 부적합		
25-1	청소년 <b>활동</b> 진흥법 제18조 (수련사설의 안전점검 등	수련 시설 의 안전 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26-1	초고층재난 관리법 제16조 (종합 방재실의 설치·운영)	종합 방재 실 설치 기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26-2	초고층재난 관리법 제18조 (피난안전 구역 설치)	피난 안전 구역 설치 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7-1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충전 시설 등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 상 (1항: 1호 2호 3호 4호)  비대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충전 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등 □ 적합 □ 부적합		

##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비고
1-1	가축 분뇨법 제11조 (배출시설 의 설치)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2-1	건축법 제20조 (기설간축물)	기설 건축 물 건축	<ul><li>□ 허가대상</li><li>□ 허가제한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li><li>□ 신고대상</li></ul>		
2-2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 의 준용)	공작 물 축조 신고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1	<b>국토계획법</b> <b>제56조</b> (개발행위 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단서: □ 산림자원조성법/시방사업법 □ 산지관리법) □ 허가제외대상 [(4항: □ 1호 □ 2호 □ 3호) □1항 단서] □ 신고대상 (4항: 1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3-2	국토계획법 제86조 (도시 ·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3	<b>국토계획법</b> 제 <b>88조</b>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 계획	□ 인가대상 □ 인가제외대상 □ 인기변경대상 □ 인기폐지대상		
4-1	<b>농지법</b> 제 <b>34조</b>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농지 전용	<ul> <li>□ 허가대상</li> <li>□ 변경허가대상</li> <li>□ 허가제외대상 (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li> <li>□ 협의대상 (2항: □ 1호 □ 1의2호 □ 2호)</li> <li>□ 협의제외대상 (2항: 1호단서)</li> </ul>		
4-2	<b>농지법</b> 제35조 (농지전용 신고)	농지 전용 신고	<ul><li>□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3항에 해당 시]</li><li>□ 변경신고대상</li></ul>		
4-3	농지법 제43조	농지 전용	□ 해당있음 □ 해당없음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허가 특례		
	5-1	대기 <b>환경</b> 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시도지사) □ 신고대상(시도지사) □ 허가대상(환경부장관) □ 신고대상(환경부장관)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허가 기준	□ 적 합 (7항 : □1호 □2호) □ 부적합	
	6-1	<b>도로법</b> 제36조 (도로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 아닌 자로 공사	□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6-2	<b>도로법</b>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 와 다른 시설 연결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6-3	<b>도로법</b>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 점용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 변경허가대상	
		도시공원법 제24조	도시 공원 점용 허가	<ul><li>□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li><li>□ 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li></ul>	
	7-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 조건 우선 허가 대상	□ 적 합 □ 부적합 □ 해당있음 □ 해당없음	
	8-1	도시정비 법 제57조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에 따른 의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9-1	9-1	<b>물환경</b> 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의 설치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1항 □ 1항 단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	
		의 결시 허가 및	서류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기준	□ 적 합 (11항 : □ 1호 □ 2호 □ 3호) □ 부적합	
10-1	<b>사도법</b> 제4조 (개설허가 등)	사도 개설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2호 □ 4호)	
11-1	<b>산지</b> <b>관리법</b> <b>제14조</b> (산지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11-2	<b>산지관리법</b> <b>제15조</b> (산지전용 신고)	산지 전용 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변경신고대상	
11-3	<b>산지관리법</b> 제15조의2 (산지일시 사용허가 · 신고)	산지 일시 사용	<ul> <li>□ 허가대상</li> <li>□ 신고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li> <li>□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li> <li>□ 변경신고대상 (□ 1항 단서 □ 4항 준용)</li> </ul>	
12-1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 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허가제외대상	
13-1	<b>수도법</b> <b>제38조</b> (공급규정)	수돗 물의 공급	□ 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	
14-1	수산자원 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 보호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등)	수산 자원 보호 구역 행위 허가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15-1	<b>자연공원법</b> <b>제23조</b> (행위허가)	허가 기준	□ 적 합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부적합	
		관계 기관 협의	□ 협의대상 □ 심의대상	

16-1	전기인전 관리법 제8조 (자가용 전기설비 의 공사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자용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 착공 후 신고대상	
17-1	<b>초지법</b>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초지 전용 가능 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초지 의 전용	<ul><li>□ 허가대상</li><li>□ 신고대상</li><li>□ 변경신고대상</li><li>□ 협의대상</li><li>□ 허가・신고 제외대상</li></ul>	
		대체 초지 조성 비	□ 납부대상 □ 감면대상 (8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8-1	<b>토양환경</b> 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의 신고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설치 조건	□ 적 합 □ 부적합	
19-1	<b>하수도법</b> <b>제27조</b> (배수설비 의 설치등)	배수 설비 설치 의무	□ 해당있음(설치신고대상) □ 해당없음	
		설치 대행 요건	□ 설치대행대상 □ 설치대행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신고 내용	□ 일반사항 □ 특수사항	
19-2	<b>하수도법</b> 제 <b>34조</b>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설치대상 □ 설치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신고 종류	□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설치 및 폐쇄 기준	□ 적 합 (설치 : □4항, 폐쇄 : □5항) □ 부적합	
20-1	<b>하천법</b>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 점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점용 기준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 8항] □ 부적합	